

거주사실 확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14일	
수분양자 (거주의무자)	성명	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	연락처	(자택)	
				(휴대전화)	
주택의 표시	(아파트) (동) (호)				
	주택 소재지(주소)				
	전용면적 (㎡)		사용 검사일 년 월 일		
	계약체결일 년 월 일		최초 입주가능일 년 월 일		
	전매제한기간: 거주의무기간:		소유권 이전일 년 월 일		
거주기간	총 거주기간: 년 월 (유예기간: 년 월 일)		-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: 년 월 일		
			- 거주의무기간 개시일: 년 월 일		
		- 1회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
		- 2회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
거주의무 이행 완료일		년 월 일			

「주택법」 제57조의2제6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거주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첨부서류	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「주택법」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	수수료 없 음					
처리절차								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기안·결재	→	통보
신청인		처리기관: 지방자치단체의 장						